

서울특별시 마포구 성평등 기본 조례안

심사 보고서

2013. 1. 17
복지도시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2013.1.8. 오 진 아 의원 외 4명
- 나. 회부일자 : 2013.1.11.
- 다. 상정일자 : 제174회 임시회 제2차 위원회(2013.1.17)
상정, 심사, 의결

2. 제안설명요지

제안설명자 : 오 진 아 의원

가. 제안이유

「여성발전기본법」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 성평등을 촉진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1) 용어의 정의,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, 구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(안 제2조 ~ 제4조)
- 2) 「여성발전기본법」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

로 연도별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(안 제6조)

- 3) 성평등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 ~ 제14조)
- 4)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40% 이상으로 하여야 함(안 제16조)
- 5) 구청장은 소속직원의 보직관리·승진·포상 및 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고, 이를 통하여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(안 제17조)
- 6)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함(안 제19조)
- 7) 가정폭력·성폭력·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함(안 제24조)
- 8) 도시기반시설·공공시설·새로운 택지단지조성 등의 정책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·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(안 제27조)
- 9)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마포구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·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2조)
- 10) 성평등촉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, 소속 공무원에게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5조)
- 11)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5조에 따라 제정·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함(안 제36조)
- 12) 성평등기금 설치·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0조 ~ 제46조)

3. 검토보고 (김건재 전문위원)

0 본 조례안은 「여성발전기본법」 및 그 밖의 여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차별을 금지하고, 성평등을 촉진하며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임.

이는 여성정책의 시대적 변화에 맞추어 여성발전 기본 조례를 폐지하고, 실질적 성평등 실현을 중심으로 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을 강화하고, 구정전반에 성평등 관점이 반영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음.

0 기존의 「여성발전 기본 조례」에서 규정한 연도별 여성정책 시행계획 수립과 여성의 권리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 등을 위한 여성발전기금 운영은 본 조례안 제6조 등에서 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가 포함된 보다 구체적인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, 「지방자치법」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 성평등 촉진,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성평등기금을 설치·운용하도록 하였으며, 기존의 여성정책 관련 사항은 본 조례안 제36조 등에서 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에 따라 제정·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, 「지방재정법」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여 성별영향분석 및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였음.

또한 적극적인 성평등 촉진정책 추진 및 성평등 정책의 효과증진을 위하여 일·가족 양립 지원, 평등한 가족생활 경영, 모·부성의 권리보장, 성차별 의식 제고 및 문화조성 등을 통한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및 사회적 성평등

실현 그리고 여성정책의 새로운 흐름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도시조성을 위하여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의 정책 추진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였음.

0 안 제16조에서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·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을 현행 30% 이상에서 40% 이상으로 하여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규정하였음.

2012년말 기준 마포구 각종 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 위촉비율이 34.2%로 나타나고 있는바, 의사결정 과정에 여성의 참여기회를 제고하여 여성의 시각이 마포구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정책적인 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판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기타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: 없음